

논문편집위원회규정

제정 : 1996.03.01
개정 : 2000.03.01
개정 : 2005.03.01
개정 : 2014.11.01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논문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칭함)의 구성과 그 임무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논문 제작에 관한 사항
2. 논문 편집에 관한 사항
3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전문위원위촉)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하여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6조(업무관리) 본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본 위원회의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본 위원회의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본 위원회의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본 위원회의 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본 위원회의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본 위원회의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본 위원회의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본 위원회의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